

영화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업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가 정한 금액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 부서)						